

훈민정음 頒布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강창식(충북대학교)

1. 머리말

1.1. 訓民正音은 국어학 분야의 가장 뛰어난 연구 성과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으로 국어학자들은 그동안 훈민정음 연구에 무엇보다도 큰 관심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로 지금까지 나온 훈민정음 관련 연구 논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이미 1970년대 초반에 “훈민정음에 관해 새삼스럽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구차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을 정도이다.¹⁾ 그렇지만 훈민정음에 관한 논의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직도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한 궁금증이나 논란거리가 적잖이 남아있고, 새로운 연구 과제도 자꾸 생겨나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訓民正音의 ‘頒布’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다시 짚어보려고 한다. ‘반포’와 관련한 논의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몇 가지 오해와 쟁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필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다시 환기시켜준 것은 ‘훈민정음 반포행사를 再現한다’는 소식이었다. 즉 수년 전부터 한글날이 되면, 훈민정음을 반포하던 당시의 장면을 再現한다는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보면서 그동안의 반포 논의를 다시 돌아보게 된 것이다. 먼저 한글날의 ‘훈민정음 반포행사 재현’에 관한 기사 내용을 소개해보기로 한다.²⁾

1) “訓民正音은 오랫동안 國語學者들의 최대의 關心事였고 특히 1940年 訓民正音(解例本)이 발견된 이래 이 方面에는 많은 研究가 이루어져 왔다. 訓民正音에 관한 資料는, 본래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이미 빠짐없이 소개되었고 이들에 대한 論議도 여러 모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니 訓民正音에 대한 새삼스런 이야기는 대개 구차스런 느낌을 주기 쉽다.” (李基文, 1974)

서울시는 제562돌 한글날인 9일 오후 경복궁 근정전에서 훈민정음 반포 당시를 재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되던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재현의례는 북소리와 함께 문무백관과 세종대왕이 차례로 등장하고, 왕에게 신하들이 절을 4번 한 후 훈민정음이 반포되는 순서로 진행됐다. 재현의례 후에는 궁중무용과 정악 공연이 펼쳐졌다. (연합뉴스, 2008.10.9.)

한글창제 563돌을 기념해 10월 9일 오전 11시 서울 경복궁 근정전에서 ‘훈민정음 반포 재현 행사’가 열렸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세종문화회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글 창제 과정과 반포의 순간을 알리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의 절차는 ‘세종장헌대왕실록’ 오례(五禮)의 ‘교서반강의(敎書頒降儀)’를 참고해 재구성했다. 관람객들은 ‘초엄→이엄→삼엄→국궁사배→훈민정음 반포→국궁사배→삼고두→산호→국궁사배→예필→해엄’이라는 훈민정음 반포 절차를 지켜보며 뿌듯해하기도 했고 가슴 뭉클해하기도 했다. (공감코리아, 2009. 10. 12)

위와 같은 기사를 보면, 누구라도 ‘훈민정음 반포 당시의 상황이 이미 확실하게 고증되어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再現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훈민정음 반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거의 없고 그에 대한 논의조차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훈민정음 반포행사가 재현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슨 행사를, 어떻게 재현한다는 거지?’ 하는 의문이었다.

현재까지 훈민정음 반포 당시에 있었던 일로 확인된 것은 단 한 가지에 불과하다. 『訓民正音』의 완성이 바로 그 유일한 사건이다. 따라서 반포행사 재현에 그밖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그것은 虛構일 수밖에 없다. 즉 위의 기사에 소개된 반포행사는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 반포행사를 재현하겠다는 발상과 시도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하는 점이다.

필자는, 훈민정음 반포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 내용에 몇 가지 오해가 있었고, 그것이 결국 한글날의 반포행사 재현이라는 결과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즉 많은 학자들이 ‘한글날에 『訓民正音』이 간행되었으며, 그것이 곧 훈민정음의 반포’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근거해서 반포행사 재현이라는 시도가

2) 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행사 소식과 내용을 접했을 뿐이고, 아직까지 그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현장에 가서 살펴본 적은 없다.

나왔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재현된 반포행사를 놓고 시비를 논하기 이전에 학자들의 논의 내용부터 따져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한다.

1.2. 주지하듯이,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한 것은 ‘세종 28년 9월 上旬에 훈민정음이 정식으로 반포되었다’는 학자들의 논의 결과를 따른 것이다. 즉 많은 학자들이 훈민정음의 반포를 확실하게 검증된 사실인양 시기까지 못박아 언급해왔으며, 한글날 제정 등을 통해서 그러한 인식이 일반에게까지 더욱 확산되고 굳어져왔다. 그러나 ‘훈민정음이 세종 28년 9월 上旬에 정식으로 반포되었다’는 학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확실치 않은 다시 말해 오판일 가능성이 높다.

학자들이 세종 28년 9월에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은 世宗實錄 28년 9월조에 보이는 “是月訓民正音成”이라는 내용 때문이다. 즉 이 내용을 『訓民正音』간행 기록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다시 ‘훈민정음의 정식 반포’라는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³⁾ 그런데 최초의 해석과 그 다음의 의미 부여 모두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은 결코 아니었다.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是月訓民正音成”에서의 ‘成’은 문헌의 刊行이나 배포가 아니라 ‘편찬’을 뜻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첫번째 해석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런 해석에 근거했던 그동안의 반포 관련 논의들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1.3. 훈민정음 반포 논의는 기본적으로 훈민정음 창제과정을 구명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한글날의 제정 근거를 훈민정음 반포에서 찾게 되면서 반포 논의는 성격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다. 즉 ‘훈민정음이 언제 반포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한글날을 언제로 해야 옳은가’ 하는 문제로 확대, 변질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훈민정음 반포를 다룬 논의들 중에는 후자의 관점에서 비

3) 『訓民正音』이 세종 28년 9월에 간행되었다고 명기하고 있는 논저는 아주 많지만 몇 예만 들어보기로 한다.

“訓民正音이 일단 세상에 公表된 것은 世宗 25年 12月이요, 「訓民正音」이란 책이 간행된 것은 世宗 28年 9월이었다.” (이기문, 1974)

“최초의 教材는 한글을 반포하기 위하여 간행된 1446년의 訓民正音解例本이라 할 것이다.”(안병희, 1985)

“훈민정음은 세종 28년(1446년) 음력 9월에 간행되어 나왔다”. (이현희, 1997 p. 237)

못된 것도 적지 않다.

필자는 훈민정음 반포와 한글날의 관계 역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훈민정음 반포일을 한글날로 삼는다’는 원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한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즉 훈민정음 반포일을 특정할 수 있다면 현재와 같이 ‘반포일 = 한글날’이라는 원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반포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한글날을 정할 때 꼭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로 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도 없다.⁴⁾ 즉 반포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한글날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적당한 날을 찾아서 한글날로 지정하고 기념해야 한다.⁵⁾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의 반포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이 곧바로 한글날을 다른 날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頒布의 개념과 용례

2.1. 훈민정음 반포와 관련한 자료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頒布’라는 용어의 개념부터 확인해보기로 한다.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頒布’의 뜻을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한다’로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용례로 ‘훈민정음 반포’나 ‘경국대전의 반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반포’라는 용어는 현대에는 잘 쓰이지 않지만,⁶⁾ 예전에는 널리 쓰였던 말이었다.

실제로 『朝鮮王朝實錄』에서 ‘반포’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무척 많은 용례를 쉽

4) 한글날이 처음부터 10월 9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11월 4일을 ‘가가 날’로 정해 기념하다가 이후 음력 9월 29일, 10월 28일 등으로 날짜가 바뀌었다. 그러다가 1940년에 『訓民正音』(해례본)이 발견되고 거기에서 ‘9월 上旬’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면서 1946년부터 10월 9일을 한글날로 삼게 되었다.

5) 한글날은, 엄밀히 말해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6) 현대 사건의 경우에는 ‘維新 宣布, 국민교육헌장 公布, 대통령선거 公示’ 등에서 보듯이 선포, 공포, 공시 등의 용어가 주로 쓰인다.

게 찾을 수 있다.⁷⁾ 예컨대, 조선왕조실록의 국역문을 대상으로 ‘반포’를 검색하면 무려 4235건의 용례가 나올 정도이다. 물론, 국역문에 ‘반포’로 나온다고 해서 원문(漢文)에 모두 ‘頒布’로 기록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頒, 頒賜, 頒行, 廣布’ 등의 경우도 모두 ‘반포’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례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다. 『朝鮮王朝實錄』에 보이는 ‘반포’의 용례를 구체적으로 몇 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朝鮮王朝實錄』의 반포 용례

- ㄱ. 『침구동인도』를 간행하게 하여 중외에 반포하였다.⁸⁾
- ㄴ. 충청·전라·경상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사마천의 『史記』를 인쇄하여 반포하고자 하니, 그 책을 인쇄할 종이를 공물로 닥나무를 사서 제조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⁹⁾
- ㄷ. 근래에 풍속이 불미하니 『삼강행실』을 많이 찍어 중외에 반포하여 향간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지토록 하며~¹⁰⁾

위의 용례에서 보듯이, ‘반포’라는 단어는 敎書를 내리거나 책을 간행하여 나누어줄 때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당시에는 세상에 널리 퍼뜨려 알리려고 할 때 교서를 내리거나 책으로 간행하여 배포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훈민정음 보급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새 문자를 창제한 후에 『訓民正音』(解例)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문헌들을 간행하여 새 문자의 보급에 힘썼기 때문이다.

이처럼, 훈민정음이 창제될 당시에 책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반포’의 주요 수단이었다면, 『訓民正音』의 刊行 및 배포를 새 문자의 반포 행위로 해석하는 것 자체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訓民正音』의 간행 시점을 한글날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일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석과 주장

7) 朝鮮王朝實錄의 검색은 간행된 문헌으로 하지 않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朝鮮王朝實錄’(http://sillok.history.go.kr)을 이용하였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실록의 내용은 출처와 검색 방법이 모두 동일하다.

8) 命刊印 鍼灸銅人圖, 頒布中外(태종 15년 12월 14일 4번째 기사)

9) 傳旨忠淸全羅慶尙道監司曰 欲印馬遷史頒布 其冊紙 以公物買楮 造作上送(세종 7년 1월 24일 4번째 기사)

10) 近來風俗不美 三綱行實 多印頒布中外 使閭巷小民, 無不周知~(中宗 6年 8月 28日 2번째 기사)

이 현실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訓民正音』의 간행 및 배포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2.2. 훈민정음의 반포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그동안에도 적잖은 논란이 있어왔다. 세종 28년 9월이 아니라 세종 25년 12월을 훈민정음의 반포 시점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도 상당수 있고,¹¹⁾ 諺解本 『훈민정음』의 간행을 반포로 보아야한다는 견해도 나온 바 있다.¹²⁾ 필자도 세종 28년 9월을 반포 시점으로 보는 현재의 통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앞의 두 경우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

훈민정음의 반포 시점에 대한 논란은 두 가지의 쟁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어떤 사건을 훈민정음의 반포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이고, 둘째는 그 사건이 있었던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이다. 이런 쟁점들은 훈민정음 반포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나 확실한 증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1)의 예에서 보듯이, 『朝鮮王朝實錄』에는 반포 사실과 시기를 명확하게 기록해놓은 사건들도 제법 보인다. 그러나 訓民正音의 경우에는 단지 몇 건의 관련 기사만 있을 뿐 반포를 직접 언급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훈민정음에 관한 기록 가운데 “是月訓民正音成”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 기록은 말 그대로 『訓民正音』이 완성되었다는 증언에 불과하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訓民正音』의 간행이나 배포로 해석하고, 거기에 다시 훈민정음의 반포라는 의미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문헌 간행을 반포 행위로 보는 것에는 동의하더라도 『訓民正音』의 완성(成)을 곧바로 刊行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¹³⁾ 이제부터 15세기의 문헌 간행 기록과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기로 한다.

11) 대표적인 예로 홍기문(1945)과 김민수(1955)를 들 수 있다. 북한이 1월 15일을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판단에서 나온 결론으로 볼 수 있다.

12) 정광(2006)에서는 세종 생존시(30년경)에 『月印釋譜』가 간행되었고, 그 권두에 훈민정음 언해문이 붙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그 때를 훈민정음 반포 시점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 “是月訓民正音成”을 간행 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은 김민수(1955), 권재선(1998) 등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3. 문헌의 편찬과 간행

3.1. 문헌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원고 작성->편집->인쇄 및 제본’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15세기의 문헌 간행은 지금보다 더 많은 과정을 거치고, 시간도 훨씬 더 길게 소요되는 작업이었을 것이다. 『朝鮮王朝實錄』을 살펴보면, 15세기의 문헌 간행이 대략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들이 나온다. 예컨대 『三綱行實圖』의 간행은 다음 3)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2) 『三綱行實圖』의 편찬, 간행, 배포

- ㄱ. 집현전에서 새로 三綱行實을 편찬하여 올리었다. 그 서문에 이르기를~ (集賢殿新撰三綱行實以進。序曰~, 세종 14년 6월)
- ㄴ. 직제학 권채를 불러 삼강행실 서문의 원대란 두 자를 고쳐서 올리라 말하다. (召直提學權採曰 前者製進 三綱行實序, 有遠邁二南之語, 세종 14년 10월)
- ㄷ. 예문 대제학 정초가 명을 받들어 三綱行實圖에 발미를 지어 올리다. (藝文大提學鄭招承命製進三綱行實圖跋尾, 세종 15년 2월)
- ㄹ. 三綱行實이라 이름 짓고 인쇄하여 반포하고 가르치도록 하다. (名曰 三綱行實 鈔梓廣布, 세종 16년 4월)
- ㅁ. 三綱行實을 종친과 신하들에게 내려주고, 또 여러 道에 내려주었다. (頒賜三綱行實于宗親及臣僚, 又賜諸道, 세종 16년 11월)

2)의 기록에서 보듯이, 『三綱行實圖』는 세종 14년에 편찬이 완료되었으나 그 뒤에 ‘수정->인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배포까지 약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朝鮮王朝實錄』에는 『龍飛御天歌』의 편찬과 간행에 관한 기록도 몇 차례 등

장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다시 옮겨보기로 한다.

3) 『龍飛御天歌』의 편찬과 간행 과정

- ㄱ. 임금이 용비어천가를 편찬하고자 하여 이 뜻을 아래에 전하다.¹⁴⁾
(세종 24년 3월)
- ㄴ. 의정부 우찬성 권제, 우참찬 정인지, 공조참판 안지 등이 『龍飛御天歌』 10권을 받치다. (중략). 판에 새겨 간행을 명하다.¹⁵⁾ (세종 27년 4월)
- ㄷ. 전하가 보시고 기뻐하였다. 이름을 내려주기를 龍飛御天歌라고 하였다. (중략). 모두 11권이다. 정통 12년(1447) 2월에 최항이 절하며 머리를 숙여 삼가 발문을 쓰다.¹⁶⁾
- ㄹ. 『龍飛御天歌』 5백50本을 군신(群臣)에게 내려 주었다.¹⁷⁾ (세종 29년 10월 16일)

3)의 기록에서 보듯이, 세종 27년 4월에 권제(權躔) 등이 『龍飛御天歌』를 10권으로 편찬하여 진상하였다. 그리고 간행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곧바로 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2년 뒤인 세종 29년 2월에 임금이 ‘龍飛御天歌’라는 이름을 내리고 최항이 발문을 썼다는 기록이 다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수정, 보완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10권이었던 책이 11권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어쨌든, 책이 간행되어 군신들에게 배부된 것은 그로부터 약 8개월 뒤, 10권으로 편찬했을 때부터 따지자면 2년 반이나 뒤의 일이다.

3.2. 『訓民正音』의 경우는, 『三綱行實圖』나 『龍飛御天歌』와는 달리, 간행 과정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지 않다. 다음 3)과 같은 두 가지 내용 정도를 실록 등

14) 時上方欲撰龍飛御天歌 故乃下此傳旨

15) 議政府右贊成權躔·右贊參鄭麟趾·工曹參判安止等 進龍飛御天歌十卷, (중략) 命刊板以行

16) 殿下覽而嘉之 賜名曰龍飛御天歌, 正統十二年二月日 崔恒拜手稽首謹跋

17) 賜龍飛御天歌五百五十本于群臣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ㄱ. 이 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임금께서 말하기를 ‘나라말씀이 중국과 달라~’ (是月訓民正音成。御製曰國之語音、異乎中國~, 세종실록 28년 9월조 기사)
- ㄴ. 정통 11년 9월 상한에~ 신 정인지가 삼가 (서문을) 쓰다. (正統十一年九月上澣~ 臣鄭麟趾 拜手稽首謹書, 『訓民正音』鄭麟趾 序)

3)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訓民正音』이 세종 28년 9월에 완성되었다(成)는 점이고, 둘째는 비슷한 시기에 정인지가 그 책의 서문을 지었다는(書) 사실이다. 책의 완성과 서문을 짓는 것이 별개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면, 둘은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처럼 『訓民正音』의 간행 과정은 기록으로 전하지는 않지만, 『三綱行實圖』나 『龍飛御天歌』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4)와 같은 간행 과정을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 4) 『訓民正音』의 간행 과정
 - ㄱ. 새 문자(훈민정음)의 완성
 - ㄴ. 훈민정음(解例) 편찬 지시
 - ㄷ. 원고 작성
 - ㄹ. 편찬 및 進上
 - ㅁ. 내용 검토
 - ㅂ. (수정, 보완) 간행 지시
 - ㅅ. 인쇄 및 배포

훈민정음의 간행 과정을 4)와 같이 가정했을 때, 궁금한 것은 3)의 기록 즉 “是月訓民正音成”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기록한 것이냐 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다. 『東國正韻』의 편찬과 간행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5) 『東國正韻』 간행 기록

ㄱ. 이 달에 동국정운이 완성되다. 모두 6권으로 간행을 명하다

(是月 東國正韻成 凡六卷 命刊行, 세종 29년 9월 戊午 조)

ㄴ. 동국정운을 모든 도(道)와 성균관, 사부 학당에 나누어 주다

(頒東國正韻于諸道及成均館四部學堂, 세종 30년 10월 庚申 조)

5)의 ㄱ에서 보듯이, 『東國正韻』의 경우에도 “是月東國正韻成”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 기록의 ‘成’은 간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편찬(완료)을 뜻하는 것이 확실하다. 바로 뒤에 간행을 명했다고 하는 기록이 덧붙여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是月東國正韻成”이 편찬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면, “是月訓民正音成” 역시 간행이나 배포가 아니라 ‘편찬 완료’ 정도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시기에 정인지가 서문을 지었다는 점도 그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5)의 기록을 보면, 『東國正韻』의 경우 간행 지시부터 배포까지 약 13개월 정도의 시차가 확인이 된다. 『訓民正音』의 경우도 편찬에서 간행, 배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訓民正音』의 경우는 편찬 후에 바로 간행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지조차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訓民正音』의 간행 및 배포 시점을 추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금까지 『三綱行實圖』와 『龍飛御天歌』 그리고 『東國正韻』의 편찬과 간행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訓民正音』의 간행 과정을 추정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15세기 당시에 문헌의 編纂과 刊行이 분명하게 구분되었고,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대의 훈민정음 논의에서도 그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간행본과 필사본

4.1. 15세기의 문헌 관련 논의에서 ‘간행’과 ‘편찬’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모든 문헌은 편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편찬된 문헌이 모두 간행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간행이 되더라도 편찬과 간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문헌의 간행 시점보다 편찬 시점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訓民正音』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편찬과 간행에 부여할 수 있는 의미도 크게 다를 수 있다. 후자는 훈민정음의 반포 행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전자는 그렇게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 여러 종류의 정음 문헌이 만들어졌다. 그 문헌들 중에는 활자로 인쇄한 刊行本도 있고, 인쇄하지 않은 즉 붓으로 써서 만든 筆寫本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훈민정음 논의에서는 주로 간행본들만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한 현상은 現傳하는 책들이 대부분 간행본이라는 점에서 일견 당연하거나 부득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훈민정음 연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간행본만이 아니라 필사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사본을 논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간행 대신에 편찬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편찬과 간행을 혼동할 수 없고 자연스럽게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현전하는 필사본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은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15세기 당시에는 필사본 문헌이 다수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훈민정음 연구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4.2. 15세기에는 간행본보다 더 많은 종류의 필사본 정음 문헌이 편찬되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단언할 수 있는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사실이다. 우선 『龍飛御天歌』처럼 간

행된 문헌의 경우에도 필사본 문헌이 함께 존재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龍飛御天歌』를 간행하기 전에 미리 임금에게 편찬한 책을 올렸는데, 그 책이 바로 필사본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에게 책을 미리 올리는 절차가 없었더라도, 간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 편찬 즉 필사본 제작이 반드시 선행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간행본과 무관한 필사본이다. 즉 필사본으로만 만들고 간행은 하지 않은 문헌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같은 책을 여러 권 만들 필요가 없는 경우라든지 간행을 위해 편찬했지만 후에 내용이 바뀐 필사본들은 당연히 간행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식적인 판단만으로도 15세기에는 간행본보다 더 많은 종류의 필사본이 존재했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현전하지 않는 필사본 문헌의 논의는 분명히 타당성을 증명하기도 어렵고 오관의 위험성도 높다. 그렇지만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 또 그런 추정이 다른 논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언급을 자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판단에서, 현전하지는 않지만 필사본으로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문헌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보기로 한다.

4.3. 주지하듯이, 訓民正音(諺文)은 세종 25년 12월에 처음으로 신하들에게 공개되었다. 세종실록은 두 군데서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6) ㄱ.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干文字及本 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세종 25년 12월조)
- ㄴ.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세종 28년 9월조) 18)

18) 『訓民正音』정인지 서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동일한 내용이 세종실록 28년 9월조에도 실려 있다.

6)의 두 기록을 보면, 모두 ‘癸亥年 겨울에 임금이 정음 28자를 창제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두 기록에서는 약간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다. ㄱ에서는 새 문자를 諺文이라고 적고 있지만, ㄴ에서는 正音이라고 하고 있으며, ㄴ에는 ㄱ에 없는 “略揭例義以示之”라는 언급이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略揭例義” 즉 새 문자에 대해 간단히 예를 들어 보여주셨다는 내용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새로 만든 문자를 신하들에게 처음 공개하고 설명하면서 아무런 문서도 없이 단순히 구두로만 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즉 이기문(1974)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새 문자의 체계와 용법 등을 담은 문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하들에게 보여주며 설명을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을 실록에서 “略揭例義”라고 기술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略揭例義를 위해 만든 문서가 실제로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간행본이 아니라 필사본(문서)이었을 것이다.

최만리 등이 세종 26년 2월에 올린 상소문에 보면, “언문을 갑자기 이배(吏輩) 10여 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내용대로 이배들에게 실제로 언문을 가르쳤다면 당연히 교재용 문헌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것은 세종이 새 문자를 친제하여 공개한 직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므로 略揭例義 당시에 사용한 문서를 교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정음(언문) 창제 직후부터 필사본 문헌이 만들어져서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 28년 9월에 편찬된 『訓民正音』은 어제 서문과 본문 그리고 해례와 정인지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어제 서문과 본문이 바로 세종 25년에 공개된 例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각종 논의에서 ‘例義’라는 용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학자들이 많다. 예컨대, 『訓民正音』은 ‘例義’와 ‘解例’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술하는 식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기문(1974)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훈민정음 本文은 세종실록 28년 9월조에 실려 있지만, ‘略揭例義’는 세종 25년 12월에 있었던 일이다. 두 내용이 같은 것이었다면, 그 내용을 실록에 기록할 때 28년 9월이 아니라 25년 12월 기사로

실었어야 마땅한 것이다.

필자는 세종 25년 12월에 공개된 ‘例義’의 내용은 『訓民正音』本文과 상당히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例義 공개 이후, 한자음 개신 등의 정책 변화로 말미암아 문자의 명칭과 체계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¹⁹⁾ 어쨌든, 훈민정음은 ‘略揭例義’가 있는 후 약 3년 뒤에 편찬되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例義’의 내용이 필사본의 형태로 여기저기 퍼져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추정과 관련하여, 필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訓蒙字會』凡例에 실려있는 ‘諺文字母’의 내용이다.

4.4. 中宗 때 최세진이 편찬한 『訓蒙字會』의 凡例에는 ‘諺文字母(俗所謂反切二十七字)’라는 제목으로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이 실려있다.²⁰⁾ 그런데 그 내용 즉 字母의 분류 방법이나 순서 등이 『訓民正音』과 아주 달라서 일찍부터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 ‘諺文字母’ 내용은 『訓蒙字會』의 저자인 최세진이 창안한 것으로 오인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당시 세간에 알려진 내용을 옮겨서 수록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

최세진은 ‘시골사람들 중에 언문을 깨치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諺文字母’ 부분을 넣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 말을 달리 해석하면, 서울사람들은 당시 언문을 대부분 알고 있었으며, 언문을 배울 때 ‘諺文字母’의 내용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즉 『訓蒙字會』 편찬 당시에 『訓民正音』과는 다른 언문 학습서가 하나 더 존재했으며, 그것이 세간에 널리 유통되고 있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최세진이 『訓蒙字會』에 『訓民正音』의 내용을 수록하지 않고 ‘諺文字母’를 넣은 것은 당시에 언문 학습 교재로 후자가 전자보다 더 널리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

19) 처음에는 새 문자로 고유어만 적으려고 했다가 한자음까지 적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 변화의 단초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한자음 표기 및 교정 때문에 『東國正韻』의 편찬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諺文이었던 명칭도 訓民正音으로 바뀌고, 글자 수나 체계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20) 『訓蒙字會』의 경우도 흔히 中宗 22년(1527)에 처음 간행되었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때 편찬(서문 작성)된 것이다. 『訓民正音』과는 80여 년의 시차가 있다.

일 것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에 대한 공식 해설서는 어디까지나 세종 28년 9월에 완성된『訓民正音』이었다. 그러므로『訓民正音』이 간행된 후에 누군가가 내용이 다른 ‘諺文字母’를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세간에 유통시켰을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諺文字母’가『訓民正音』보다 먼저 작성되어서 세간에 널리 퍼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諺文字母’의 최초 작성자가 누구였을까 하는 쪽에서 접근해도 결론은 비슷하다.『訓民正音』은 聲韻學의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訓蒙字會』의 ‘諺文字母’의 내용은 그와는 다른 독자적인 체계와 이론을 보여주고 있다. 字母의 분류 방법과 배열순서가 다르고 음가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漢字도 다르다.²¹⁾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와 같은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인물로 떠오르는 후보는 세종 임금 한 사람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추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 7) ㄱ. 세종 25년 12월에 임금이 언문 해설용 문서(例義)를 만들어 공개하였다.
- ㄴ. 例義는 바로 간행되지 않았지만, 필사본의 형태로 세상에 퍼져나갔다.
- ㄷ. 세종 28년 9월에 내용이 달라진 공식 해설서『訓民正音』이 편찬되었다.
- ㄹ. 최세진이『訓蒙字會』를 편찬하면서 당시 세상에 퍼져있었던 例義 방식의 언문 해설 내용을 수록하였다.²²⁾

현대의 한글맞춤법에 규정된 자모의 명칭과 순서는『訓民正音』이 아니라 ‘諺文字母’에 뿌리를 두고 있다.『訓蒙字會』의 ‘諺文字母’ 내용이『訓民正音』보다도 더 큰 영향을 후대에 미친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중요한 ‘諺文字母’의 내용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그에 대한 논의조차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한 점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판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7)과 같은 추정을 제시해본 것이다.

21) 『訓民正音』에서는 ‘ㄷ(吐) > ㅌ > ㄴ’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지만, ‘諺文字母’에서는 ‘ㄴ>ㄷ>ㅌ’의 순서를 취하고 있다. 전자는 성운학의 체계(전청>차청>불청불탁)를 따른 것이지만, 후자는 제자 순서에 근거한 것이다.

22)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이미 李東林(1974)에서도 제시한 적이 있다.

5. 맺음말

5.1. 지금까지 훈민정음 반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들을 짚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핵심이 되는 사항을 하나 꼽는다면, 문헌 논의에서 편찬과 간행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훈민정음 반포와 관련한 대부분의 오해는 “是月訓民正音成”이라는 기록을 『訓民正音』의 ‘편찬’이 아니라 ‘간행’으로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간행’이 다시 ‘반포’라는 해석으로 이어졌고, 그런 해석은 한글날의 제정과 성격 규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그 결과로 이제 한글날이 되면 누구나 훈민정음 반포를 머리에 떠올리게 되고, 그런 상황이 결국 반포행사 재현이라는 발상과 실천을 불러온 것이다.

머리말에서도 밝혔듯이, 훈민정음에 관한 연구 논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나 연구 성과도 그에 비례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논의를 되풀이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종이 훈민정음을 친제했다는 사실은 오래 전에 확인된 내용이어서 새로운 논의거리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아직도 훈민정음 창제 주체로서 집현전 학자들을 언급하거나 주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친제하여 공개한 후에 解例 편찬과 표준한자음 제정 등의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런 사업에는 집현전 학자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문자 제작과 해례 편찬 등은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해서 주체와 시기 등을 논해야 한다. 예컨대, ‘훈민정음 창제’는 문자 제작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념을 규정해야만 그 주체는 세종이고, 완성 및 공개 시기는 세종 25년 12월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문자 창제와 『訓民正音』편찬 그리고 표준한자음 제정 등은 서로 관련이 있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훈민정음 창제 사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업의 주체와 시기를 말

할 때 답이 명확하지 않고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훈민정음의 창제 주체로 세종 외에 집현전 학자들이 끊임없이 거론되는 이유도 세종이 친제한 문자 창제와 집현전 학자들이 참여한 후속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5.2. 한글날을 언제로 정하는 것이 옳으나 하는 문제는 이 글의 주요 논의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룬 문제들이 결국은 한글날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한글날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간단히 밝혀보기로 한다.

현재, 한글날에는 훈민정음 반포일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처럼 세종 28년 9월 상순에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훈민정음 반포일’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즉 한글날을 다른 날로 바꾸거나 한글날의 의미를 다시 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훈민정음을 정식으로 반포한 날을 한글날로 삼는다는 원칙은 일견 그럴듯하지만, 반포일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반포 시점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가 훈민정음의 반포 시점을 세종 28년 9월이 아니라 세종 25년 12월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록에는 세종 25년 12월에 임금이 새로 만든 문자를 공개하고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까지 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에 최만리 등의 반대 상소가 있었던 것을 보면, 세종 25년 12월에 새 문자가 공개되고 그때부터 보급 작업이 시작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세종 25년 12월을 훈민정음의 반포 시점 더 나아가 한글날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세종 25년 12월을 반포 시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 또한 그럴듯한 근거가 있다. 반론의 요점은 세종 25년 12월에 완성, 공개된 문자체계의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 공개한 문자 체계가 3년 뒤

에 편찬된 『訓民正音』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한 것이었는지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종 25년 12월 당시에는 새 문자의 공식 명칭이 ‘訓民正音’이 아니라 ‘諺文’이었을 가능성이 높다.²³⁾ 그러므로 최초 공개 이후 글자의 명칭뿐만 아니라 수와 모양 그리고 적용 범위 등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훈민정음의 최종 완성이나 반포일은 『訓民正音』이 간행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한글날도 그렇게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필자는 세종 28년 9월 상순에 『訓民正音』의 간행이 아니라 편찬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그 날을 반포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한글날로 정한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즉 『訓民正音』의 편찬일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날을 한글날로 삼아야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한글날을 다른 날로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10월 9일을 한글날로 계속 유지하더라도 한글날의 의미와 제정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 8)과 같이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해야 한다.

- 8) ㄱ. 訓民正音의 완성이나 반포 시점은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 ㄴ. 세종 28년 9월 상순에 『訓民正音』이 편찬되었다.
- ㄷ. 『訓民正音』이 편찬된 시점을 한글 창제 기념일로 삼는다.

23) 세종 26년 2월에 나온 최만리 등의 상소문과 그에 대한 세종의 詰問에는 ‘諺文’이라는 이름만 보이고 ‘訓民正音’이라는 명칭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 姜信沆(1987), 訓民正音 研究, 成均館大 出版部.
- 장창석(1992), 15세기 音韻理論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1996), 훈민정음 연구의 성과와 과제, 광복50주년 국학의 성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권재선(1998), 한글 반포에 대한 고찰, 어문학 64, 1-24.
- 김민수(1955), 한글 반포의 시기 : 세종 25년 12월을 주장함, 국어국문학 14.
- 金完鎭(1984),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서울대.
- _____(1986), 훈민정음 창제의 제 단계, 제1차 KOREA학 국제교류세미나논문집, 흥룡강
조선민족출판사.
- 박대중(2009), [훈민정음] 例義와 해례본 완성일, 한글+漢字문화 125, 90-91.
- 방중현(1948), 訓民正音通史, 一成堂書店.
- 안병희(1985), 훈민정음 사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 : 창제로부터 19세기까지, 동방학지
46·47·48, 연세대.
- _____(2004), 世宗의 訓民正音 創制와 그 協贊者, 국어학 44집.
- 여중동(1990), 훈민정음을 반포한 일이 없었다, 어문연구 제20집, 185-188.
- 李基文(1971), 訓蒙字會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1974), 훈민정음 창제에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2.
- _____(1976), 최근의 훈민정음 연구에서 제기된 몇 문제, 진단학보 42.
- 이동림(1974), 訓民正音 創製經緯에 對하여 - 俗所謂半切二十七字와 相關해서, 국어국문
학 64, 59-62.
- 이승녕(1958), 세종의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 : 특히 운서편찬과 훈민정음 제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아세아연구 1.2,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pp 29-83.
- 이현희(1997), 훈민정음, 새국어생활 7권 4호, pp 237-253.
- 임용기(2008),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음운 이론과 훈민정음, 한국어학 제41권.
- 정 광(2006), 새로운 자료와 시각으로 본 훈민정음의 創製와 頒布, 언어정보 7, pp. 5-37.
- 최현배(1961), 고친 한글갈, 정음사.
- 홍기문(1945), 정음발달사, 서울신문사출판국.